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27 선고 2020나71200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

담당변호사 박용식

피고, 피항소인 B 주식회사(변경 전 상호 : C 주식회사)

변 론 종 결 2021. 9. 8.

판 결 선 고 2021. 10. 27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10. 선고 2020가소1510114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,185,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4. 23.부터 2021. 10. 27.까지는 연 6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,185,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0. 15.부터 이 사건

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6개동 510세대(이하 ‘이 사건 아파트’라 한다)를 신축·분양한 사업주체이고, 원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인데, 이 사건 아파트는 2013. 12. 3.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사용검사를 받았다.

나. 원고는 피고와 2013. 4. 25.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PL창호공사를 공사금액 2,343,000,000원, 기간 2013. 4. 25.부터 2013. 12. 12.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, 2013. 12. 12. 그 공사금액을 2,333,680,000원으로, 기간을 2013. 4. 25.부터 2014. 2. 28.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변경계약을 포함하여 ‘이 사건 하도급계약’이라 한다).

다.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PL창호공사를 완료하였다. 그런데 피고는 세대 내 대피공간의 창호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그 창틀 폭 규격이 117mm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폭이 85mm인 창틀로 시공하였고, 이러한 변경시공 하자(이하 ‘이 사건 하자’라 한다)로 인하여 절감된 시공비 차액은 12,732,201원이다.

라.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. 5. 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 531197호로 사업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상대로 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원고는 2017. 7. 11.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한 후 2018. 5. 3. 피고를 비롯한 하수급업체들에 소송고지를 하였는데, 위 법원은 2019. 9. 6. ‘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1,807,606,26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그 무렵

확정되었다.

마. 원고는 위 소송 결과에 따라 2019. 10. 15.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위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판결원리금을 지급하였는데, 그 금액 중 이 사건 하자로 인한 금액은 시공비 차액인 12,732,201원의 80% 해당액인 10,185,761원(= 12,732,201원 × 80%, 원 미만 반올림)이다. 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,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되는바(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9다268252 판결 등 참조)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,185,761원1) 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피고의 경영권이 2015. 5. 26. 양도·양수되는 바람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규격 변경 또는 품목 변경은 하수급업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발주자와 시공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시공을 하였을 것이므로,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다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을 제1 내지 3, 5 내지 8,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발주자와 시공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,185,7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0. 4. 23.부터2)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. 10. 27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, 그다음 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,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심재남, 판사 최규연, 판사 최태영

1) 피고가 공사한 이 사건 창호공사 부분에 이 사건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,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였다면, 시공사인 원고로서는 발주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판결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는데, 그렇지 아니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느라 10,185,761원을 출연하는 손해를 입었다.

2)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한데,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최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.